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2. 06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11. 21

나. 제안자 : 이용범, 신동수, 홍성욱, 박승희, 안영수, 신현환 의원
(찬성자 3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. 11. 21

라. 상정일자 : 2013. 12. 06(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용범 의원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임

나. 주요골자

-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(안 제3조)
 -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

-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(매년 8월 29일, 조기 계양)
- 인천광역시민의 날(매년 10월 15일)
-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계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- 국기 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태극기 지급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·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6조)
-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마을 또는 기관·단체에 포상 근거 규정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제정 조례안은 태극기의 계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, 나라 사랑과 태극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검토 의견으로는
 - 「대한민국 국기법」에 의거하여 국기 보급과 선양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
 - 현재, 국기보급 및 선양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최용덕 위원>

○ 국기 제양일은 국가가 정하는 사항, 조례로 정하면 문제?

⇒ 5개 시·도 조례 시행, 조기제양의 지자체별 시행은 재고 의견 있으나 다른 분야는 권장.

○ 집행부에서 충분한 유권해석 검토하여 문제 없도록 해야함.

⇒ 입법예가 있고,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는 없음.

○ 국가사무로 불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오면 곤란.

⇒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하여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 임.

<이상철 위원>

○ 시민들의 실질적 인식 제고 등 방안 마련 중요. 군, 구에 홍보하고 각 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지원 방법 등 강구바람.

<차준택 위원>

○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조항에서 비영리인지, 영리인지?

⇒ 영리법인 포함.

○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이용범, 차준택, 최용덕, 류수용, 이상철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❖ 수정가결 내용

제정조례안중 제6조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조항에 있어서 “법인 및 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 및 단체”로 수정함.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

1.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3.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중 “법인 및 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 및 단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 ~ 제5조 (생략)	제1조 ~ 제5조 (제정안과 같음)
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시 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 보·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법인 및 단체</u> 등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--- ----- ----- <u>비영리법인 및 단체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 ~ 제8조 (생략)	제7조 ~ 제8조 (제정안과 같음)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,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민국의 국기”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 선양”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(매년 8월 29일, 조기 게양)
3. 인천광역시민의 날(매년 10월 15일)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제4조(국기의 선양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기 보급사업)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5.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·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제7조(포상) 시장은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마을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